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유용원 · 김상훈
고동진 · 최수진 · 김용태
신성범 · 박덕흠 · 송석준
김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, 사전투표 운영,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 · 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, 개선과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 ·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선거관리점검위원회)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사무를 점검·평가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둔다.

② 선거관리점검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
2. 정보보호·감사·회계·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정책전문가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당원

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.

1. 제5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
2.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
3.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

⑦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·평가 등을 실시한다.

1. 투·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
2. 사전투표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3.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
4. 선거비용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5. 투표소·선거정보·선거공보물의 물리적·디지털 접근성 확보 등 장애인·고령자를 비롯한 선거약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
6.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
7. 제13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선거 또는 국민투표 준비 과정에서의 공정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⑧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⑨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, 투표용지 인쇄소, 투표함 보관소, 개표소,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위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소속, 성명과 출입 목적을 밝혀야 한다.

⑩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⑪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, 영업비밀 또는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정보가 점검·평가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⑫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점검·평가 중 법령 위반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, 관련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⑬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일 후 60일까지 제7항에 따른 점검·평가 결과 및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종합보고서와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(이하 “권고 이행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,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⑮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위원의 자격요건·대우, 점검·평가의 절차·방법, 종합보고서의 작성·제출·공개, 권고 이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2(선거관리점검위원회)</u> ① <u>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사무를 점검 · 평가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둔다.</u> ② <u>선거관리점검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 ③ <u>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 1.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</u> 2. <u>정보보호 · 감사 · 회계 ·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</u> 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</u>

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당원

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.

1. 제5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

2.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

3.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

⑦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·평가 등을 실시한다.

1. 투·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

2. 사전투표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
3.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

보안에 관한 사항

4. 선거비용 집행의 적정성에
관한 사항

5. 투표소·선거정보·선거공보물
의 물리적·디지털 접근성 확
보 등 장애인 및 고령자를 비
롯한 선거약자의 참정권 보장
에 관한 사항

6.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
관한 사항

7. 제13항에 따른 종합보고서
작성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선거 또는 국민투표
준비 과정에서의 공정성·신
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
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
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⑧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그
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
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
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⑨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위원
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관
리위원회의 사무소, 투표용지
인쇄소, 투표함 보관소, 개표소,

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위원은 그 신분
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소속, 성명과 출입
목적을 밝혀야 한다.

⑩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
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
요청할 수 있다.

⑪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
함된 개인정보, 영업비밀 또는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정보
가 점검·평가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
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
여야 한다.

⑫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점검·평가 중 법령
위반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

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, 관련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⑬ 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일 후 60일까지 제7항에 따른 점검·평가 결과 및 제12항에 따른 시정 권고 사항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종합보고서와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(이하 “권고 이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,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⑮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위원의 자격요건·대

우, 점검·평가의 절차·방법,
종합보고서의 작성·제출·공
개, 권고 이행계획의 수립·시
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
정한다.